제269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 2008년 4월 24일 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4. 24.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4월 7일
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4월 11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26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2008. 4, 21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오재헌)

1. 제안이유

O 상위 법령 및 현실운영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조)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 및 제141조 → 제104조 및 제151조

- 나. 혁신담당관실 소관 "해피콜(Happy Call)센터 운영사무"민간 위탁.(별표 일련번호 1)
 - "Happy Call센터 운영사무"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 제고와 객관적 운영을 기함 ※ 사무내용: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, 불만요인, 건의사항 등 조사
- 다. 전략산업팀 소관 "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"의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.(별표 일련번호 5)
 -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경쟁력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
- 라. 청소년아동과 소관 "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" 삭제
 -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.
- 마. 보건위생과 소관 "한센이동진료사업 사무" 삭제
 - ○「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」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
O 이 개정조례안은 해피콜(Happy Call)센터¹⁾ 운영의 신규 민간 위탁과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

¹⁾ Happy Call센터는 2006.7.1 혁신담당관실 내에 설치되었으며,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·불만요인·건의사항 등을 전화로 조사

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O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Happy Call센터 운영의 신규 민간위탁, 경쟁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, 도 직영 (直營)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고,
- 또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동 진료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- O 다만, Happy Call센터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 시 운영비에 대한 비교분석 및 민간위탁 시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등 고용 관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.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
V. 토론요지: "생략"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W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Ⅳ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 및 제141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제151조"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민 간 위 탁 사 무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혁신담당관	1	○해피콜(Happy Call)센터 운영 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
정보통신 담 당 관	2	○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-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- 구축 및 운영 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- 기타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	(재단법인)충청북도 지식 산업진흥원	지방자치법 제104조
경제정책팀	3	○ 지방가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-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 위자에 대한 제재	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사	가능장려법 제11조, 제13조, 제15조,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
전략산업팀	4	○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	과학기술관련법인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5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
기업지원팀	6	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7	○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	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
		- 청주지방산업단지	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	제31소
		- 현도지방산업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	
		- 부용지방산업단지	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	
		- 대소산업단지	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	
		- 대풍지방산업단지	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	
		- 오창과학산업단지 (공단 임대사무 포함)	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	제1조(목적)···· <u>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</u>
<u>및 제141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	<u>및 151조·····</u>
(이하"도지사"라 한다 뭐 권한에 속하는 사	
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(A)·도지사를	
포함한다. 이하 같다 이나 법인 ·단체 또는	
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,민간	
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	
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

【별표】

민 간 위 탁 사 무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 탁 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런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		(신설)			<u>혁 신</u> 담당관	1	○해피콜(Happy Call)센터 운영 <u>산무</u>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
<u>정보통신</u> <u>담당관실</u>	1	(생략)		<u>지방자치법</u> <u>제95조</u>	<u>정보통신</u> 담 당 관	2	(현행과 같음)		<u> 지방자치법</u> <u>제104조</u>
경제정책팀	2	(생략)			경제정책팀	3	(현행과 같음)		
전략산업팀	3	(생략)			전략산업팀	4	(현행과 같음)		
	4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・도 공예품경진 대회	충북공예 협동조합 청주상공 회의소	중소기업진홍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제 40조 제 60조 및동법시행령제 45조		<u>5</u>	○ 민속공예산 업육성사무 - 도공예품경진 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
기업지원팀	<u>5~6</u>	(생략)			기업지원팀	<u>6~7</u>	(현행과 같음)		
보 건 위생과	7	O 한센이동진료 사업 업무	한국한센 복지협회 충청북도 지부	전염병예방법 제23조,제48조			<삭제>		
<u>청 소 년</u> 아 동 과	8	O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시무	청 소 년 관련법인	<u>청소년기본법</u> <u>제61조</u>			<삭제>		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51조 (사무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 - 1.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
 - 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
- 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- 4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- 5.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, 제1항의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【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】

제62조(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【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】

- 제54조(민속공예산업의 지원)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할 수 있다.
 - 1.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 - 2. 제품의 판로 확보
 - 3. 제품 개발,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

【전염병예방법】

제2조(정의) ②"전염병환자"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.

- ③"전염병의사환자"(이하 "의사환자"라 한다)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.
- 제4조 (의사등의 신고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,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,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】

- 제1조의3 (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)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 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8.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·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(시·도지부를 포함한다)
 - ※「민법」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【2008 한센사업지침】

<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의 주요업무>

-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
-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・홍보 및 조사연구
- ③ 한센병이동진료, 외래진료
- ④ 이동진료 관할지역 정착농원, 한센시설에서의 진료
- ⑤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

- ⑥ 시·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, 정착농원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
- ⑦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
- ⑧ 시·도 보건(위생)과와 업무 협조
- ⑨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